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00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2,948,890원, 농어촌특별세 16,294,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1. 6. 25. 설립되었고, 강구조물공사업과 의장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B의 발행주식은 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인데,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식보유현황(총 발행주식 50,000주)			
	2001. 6. 25.	2005. 3. 8.	2006. 11. 23.	2011. 12. 31.
C	20,000(40%)			
D	500(1%)			
E	10,000(20%)			
F	9,500(19%)	9,500(19%)		
G	10,000(20%)	10,000(20%)	10,000(20%)	
H		20,500(41%)	20,500(41%)	
I		10,000(20%)	10,000(20%)	
J			9,500(19%)	
원고				50,000(100%)

다. 피고는 원고가 2011. 12. 31. B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2013. 3. 12. 원고에게 취득세 162,948,890원, 농어촌특별세 16,294,8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결정을 받고, 2015.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8. B을 인수하면서 I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하였을 뿐이므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갑 제3, 4,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5. 3. 8. B을 인수하면서 그 주주이던 C, D, G, E, F로부터 B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그 때부터 실질적인 사주로서 B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다만 원고는 B의 주식을 위 1의 나 표와 같이 F, G, H, I에게 명의신탁하여 B 주주명부상 그들 명의로 등재한 사실, 원고는 2006. 11. 23. F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J 명의로 개서하여 J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이러한 원고의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I 등이 2011. 12. 21. 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실, 원고는 2011. 12. 31. I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개서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1. 12. 31.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B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탁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주권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원고는 I 등의 명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신탁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반면(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과는 법률관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I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이상, 여기에 신탁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I 등이 이 사건 주식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자신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원고로부터 이를 증여받았고, 그 후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 추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므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가 2011. 12. 31. B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판사 김정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끝>